

# 청주교육대학교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규정

제 정 2009. 6. 30. 규칙 제1230호  
1차 개정 2020. 5. 11. 규칙 제152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우리대학 학생에 대한 국가 근로장학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대학 국가근로장학 제도(이하 “본 제도” 라 한다)” 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국가근로장학생” (이하 “근로장학생 “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학생을 말한다.
- ② “정규학생” 이라 함은 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위탁생,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록생은 제외한다.

제4조(국가근로 장학제도 운영) 이 제도의 운영은 학생처에서 운영하며, 운영 전담자는 학생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5.11.>

1. 근로 장소의 창출 업무
2. 근로장학생 지도 및 감독 업무
3. 기타 근로장학생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5조(근로장학생 선정 기준 및 제출서류) 매학기 마다 지도교수의 추천(평점평균 2.0이상)에 의거 해당 부서장이 선발하며 선정기준별 우선순위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① 이 제도의 수혜대상은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순위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본인명의) 제출)
  2.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구 분	차상위계층(월보험료 납부금액)		비 고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1인 가구	11,440원이하	5,72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반액임
2인 가구	20,600원이하	10,300원이하	
3인 가구	26,660원이하	13,330원이하	
4인 가구	30,710원이하	15,355원이하	
5인 가구	36,770원이하	18,385원이하	
6인 가구	41,750원이하	20,875원이하	

3.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07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구 분	직장보험		지역보험	
	세 대	개 인	세 대	개 인
평균금액(원)	62,430	23,449	55,054	24,065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07. 1. 1 ~ ’ 08. 12. 31까지 월 납부한 금액 중 단 1회라도  
상기 평균 납입금액보다 적으면 3순위에 해당됨

4.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학별 배정금액의 30% 범위 내,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5.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학자금대출 대학추천요청서 제출)

6. 기타 가계가 곤란한 자(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②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는 아래 중 1부를 제출해야 한다.

- 한부모가족증명서(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
-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
- 보호자 장애증명서류(장애인수첩사본 또는 복지카드)
- 증빙서류 제출이 부득이할 경우 학생본인이 구체적으로 작성한 「가계곤란사유서」 제출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근로장학신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③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의 면제·감액의 대상이 되는 학생도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④ 국가근로 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은 이중 수혜 할 수 있다.

제6조(근로 장소)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학생이 근로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① 전공 관련시설

1. 산업체(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 및 학교기업 포함)

- 근로비중 10%이상 의무사항이며 산업체 성격에 맞는 전공이어야 한다.

2.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3. 연구소
4. 시험·측정기관
5. 실험·실습시설
6. 도서관 등 교·내외 시설

※ 전공 관련시설의 경우 전공에 맞는 학부(과)의 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하며 행정업무보조 및 청소 등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전공 시설

1. 장애인,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2.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학생 멘토링(사업)

제7조(근로 장학생 선정 절차 및 제출서류)

① 근로장학생 선정은 학생처장이 하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 공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0.5.11.>

② 공고된 일자리에서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로 신청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국가근로장학생 지원 신청서 1부[서식1] : 자체 보관
2.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서식6] : 매학기 초, 교체 시
3. 근로장학생 선정 기준별 해당 증빙서류 : 자체 보관

③ 신청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되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1. 국가근로장학생 선정자 명단[서식2] : 매학기 초
2. 국가근로장학금 청구서[서식3] : 매월 말
3. 국가근로장학생 근무상황부[서식4] : 매월 말
4. 국가근로장학생 교체자 명단[서식5] : 해당 월말
5. 동의서[서식6] : 매학기 초, 교체 시
6. 산업체 근무확인서[서식7] : 자체 보관

④ 산업체와 의무적으로 협력체결하여[서식8] 기업체의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받아 반드시 자체 보관해야 한다. 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체결하여(의무사항임) 기업체의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받아 반드시 자체 보관해야 한다.

제8조(근로기간 및 시간) 우리대학 근로장학생의 근로기간은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정하되, 주당 20시간 이내로 한다. 단, 야간 교육과정의 학생 및 방학기간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다.

### 제9조(근로장학금 산정)

- ① 근로장학생의 시간당 지원금액은 교내 6,500원, 교외 9000원으로 한다.
- ② 근로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액은 월 단위로 (시간급 임금 x 실제 근로시간) 으로 산정하여 매월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③ 근로장학생이 자의 또는 타의로 근로를 그만둘 경우에는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근로장학생 운영) ① 부서장은 매월 근로장학생 근무상황부를 작성·비치한다.[서식4]

- ② 부서장은 근로장학생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③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근로장학생 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1. 근무 기간 중 휴학 또는 제적 되었을 때
  2. 근무 기간 중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3. 근로장학생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체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부 칙(2009. 6. 30 규칙 제123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11. 규칙 제15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 국가근로장학생 지원 신청서

대학		학부(과)		학년		학번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성적(평점)		은행명					
근무부서		계좌번호					
<p>본인은 200 학년도 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p> <p>200 년 월 일</p> <p>지원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추 천 서</b></p> <p>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근면·성실하여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p> <p>200 년 월 일</p> <p>추천자(지도교수) (인)</p> <p>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p>							

[서식 2]

## 국가근로장학생 선정자 명단

부서명 :

국가근로장학생					근 무 부 서	성 적 (평점)	계좌번호	
연번	학부(과)	학년	학 번	성 명			은행명	계좌번호

국가근로장학생 선정자 명단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 . . . . .

대학(부서)장 (인)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4]

## 국가근로장학생 근무상황부

해당년월	
소속대학	
소속학과	
학 번	
이 름	

결 재	담당자	책임자

일자		근로업체 (근로장소)	학기 구분	최초근무 시작시간	최종근무 종료시간	실제 총 근로시간	근로상세내역
날짜	요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근로장학생 본인 : (서명)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5]

## 국가근로장학생 교체자 명단

부서명 :

국가근로장학생				근 무 부 서	성 적 (평점)	계좌번호	
학부(과)	학년	학 번	성 명			은행명	계좌번호
교체 전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
							“
							“
교체 후							

200 . \_\_\_\_ 월 국가근로장학생 교체자 명단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 . . . . .

대학(부서)장 (인)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6]

# 동 의 서

학부(과) :

학 번 :

학 년 :

성 명 :

본인은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졸업후 취업 등 경제활동 조사에 대하여  
동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서약자 : (인)

확인자 : 부서장 (인)

청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 국가근로 파견근무 협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청주교육대학교(이하“을”이라 한다)는 “을” 소속 재학생들의 국가근로장학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의 학생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근로확인서 제출) 필요시 “갑”은 근로 개시 후 종료하기까지 근로내용 등을 명시한 국가근로확인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은 “갑”이 제출한 국가근로확인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교육 및 취업의 범위를 확장한다.

제3조(국가근로 전 교육) 국가근로예정자들은 근로 개시 전 “갑”의 방침과 규정 및 준수사항의 이행에 대한 사항을 교육 받아야 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국가근로학생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비, 비품의 손,망실 등으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근로학생은 그 손해를 보상하며 “을”은 이를 보증한다.

제5조(기타)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근로내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각 2부를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부 칙

1.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본 협약의 시행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갑”과 “을”의 이의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년 월 일

(갑) \_\_\_\_\_ : (직인)

(을) 청주교육대학교총장: (직인)